

※신청안내

(뒤 쪽)

제출하는 곳	시 · 도 시·군·구	처리기간
		특 별 시: 8일 광역시·도:10일 시·군·구: 7일
처 리 부 서	축 산 과	
유 의 사 항	1.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. 2. 「건축법」·「학교보건법」·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등 관련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. 3.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